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보강 지연 심각

- 아산방조제 D등급 진단 후 보수없이 4년 지나-

■ 현 황

○ 안전취약시설물 현황(D급, E급) (2006. 8. 31)

구 분	교 량	터 널	건축물	항 만	하 천	댐	상수도	복개 구조물	옹 벽	절토 사면	계
D급	36	1	11	4	3	3	3	5	1	2	69
E급	2	0	0	0	0	0	0	0	1	2	5

- D급 :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E급 :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개축해야 하는 상태

○ E등급 시설물 진단결과 (2006. 9. 21)

시설명	시설구분	준공일	진단일	등급	주요 점검진단 결과
전남 금곡교	도로	1976	2005	E	교량상부, 교각, 교대부 노후진행 재가설요망
부산 구포교	도로	1932	2006	E	안전성에 위험이 크므로 재시공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음
부산 동래 복개구조물	도로	1992	2005	E	부식 발생이 많고, 안전성확보를 위해 재가설이나 전면 보강이 필요한 상태
대전 나래아파트 옹벽	옹벽	1994	2003	E	붕괴구간은 복구 ,미붕괴구간은 앵커보강이 필요한 상태
동서장관연립 주택 옹벽	옹벽	1998	2006	E	구조물의 안전상에 위험이 있어 보강이 필요

○ 안전진단일 후 현재까지 방치된 시설물 현황

(2006. 8. 31)

구 분	2002 진단	2003 진단	2004 진단	2005 진단	2006 진단
D급	2	7	20	32	8
E급	0	1	0	2	2

- 2002년 진단 : 아산방조제(D), 광양항제 품부두(2)(D)
- 2003년 진단 : 대전시 내려아파트 옹벽(E), 천안 오룡경기장(D)외 6곳
- 2004년 진단 : 인천항 제7부두(D)외 19곳
- 2005년 진단 : 잠실제1수영장(D)외 33곳
- 2006년 진단 : 부산영도대교(D)외 9곳

■ 문제점

✓ **건교부 안전시설진단 후 사후관리 부재**

- D,E급 시설물의 51.4%가 교량(38개)
- D,E급 시설물의 63.5%가 지방자치단체관리 시설(47개)
- 건교부는 안전시설진단 후 시설물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치단체나 관리주체가 보수보강공사를 한 후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하기 전까지는 보수 보강 여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나 관리주체의 보수 보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스템도 없는 상태임

✓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보강 기간 지연**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완료하도록 규정하여 최대 5년간 보수보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 실제로 아산방조제의 경우 2002년 진단 당시 콘크리트의 상태가 염해 등에 의한 노후화 징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상태가 매우 심한 편으로 대대적인 보수 및 수문의 단면 확장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되었음에도 경기도와 건교부는 보수계획만을 가지고 4년 동안 방치되고 있음

✓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부재

- 현재 1종 시설물로 되어있는 대형 교량, 항만, 도로, 댐, 터널, 21층이상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태를 일반인에게도 공개하여야 할 것임
- 관리주체가 보수보강조치를 하지 않아도 실제 공중위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이에 대한 건교부의 감시, 감독기능이 부재함

■ 대 안

○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건교부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FMS(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등재방식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도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보강 지연예방제도 마련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보강 기간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긴급보수보강에 계획서와 자금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수보강 지연에 따른 피해예방계획을 공개하도록 함